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1897호, 제1898호, 제1899호
- 다. 제출일자 : 2024. 5. 27.
- 라. 회부일자 : 2024. 5. 3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3	27,969	27,969	33,660	28,093	4	5,563	83.5

- 세입예산현액은 279억 6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336억 60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80억 93백만원을 수납하고, 4백만원은 정리보류하여 55억 63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83.5%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3	130,208	19,710	800	1,911 (-1,911)	4 (-4)	945 (-945)	150,718	130,267	14,149	600	13,549	9	6,293 (4.2%)

- 예산액 1,302억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7억 10백만원, 예비비 사용 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7억 18백만원으로, 이 중 86.4%인 1,302억 67백만원은 지출하고 9.4%인 141억 4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06%인 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2억 9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사용

- 예산 전용 사용은 3건에 4백만원으로
-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0.2백만원
-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0.4백만원
-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3백만원임.

○ 변경 사용

- 예산 변경 사용은 9건에 19억 11백만원으로
-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 50백만원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53백만원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2백만원
-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억 81백만원
-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1억 28백만원
-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15백만원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3억 12백만원
-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1억 9백만원
-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60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은 1건에 8억원으로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8억원임.

○ 이체

- 예산이체는 5건에 9억 45백만원으로
-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분담 5억 95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사무관리비) 5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기타보상금) 26백만원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3억원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2천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6억 원으로 예산현액 1,507억 18백만원 대비 0.4%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35억 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507억 18백만원 대비 0.006%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2억 9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507억 18백만원 대비 4.2%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3	150,718	6,293	4.2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 62억 61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1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3	9,966	9,966	8,531	8,531	-	-	100.0

- 예산현액 99억 66백만원 대비 85.6%인 85억 3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31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75,508	6,797	-	322 (-322)	-	-	82,305	34,286	42,476	30,124	12,352	144	5,399 (6.6%)

- 예산액 755억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9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23억 5백만원으로, 이 중 41.7%인 342억 86백만원은 지출하고 51.6%인 424억 7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53억 9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1건에 3억 22백만원으로
 -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301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823억 5백만원 대비 36.6%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23억 5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0%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액은 14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임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3억 9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823억 5백만원 대비 6.6%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3	82,305	5,399	6.6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5,399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3	36,612	37,339	34,341	34,341	-	-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373억 39백만원으로 343억 41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343억 41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36,612	727	-	-	-	36,519	37,339	32,727	157	-	157	1,172	3,282 (8.7%)

- 예산액 366억 1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7백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73억 39백만원으로, 이 중 87.6%인 327억 27백만원은 지출하고, 3.1%인 11억 72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32억 8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36,519백만원

- 2023.3.10.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치수안전과 → 물재생시설과)

- 예산이체 사용은 21건 36,519백만원으로

- 잠실상수원 퇴직물준설 2,429백만원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60백만원

-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140백만원

-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199백만원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65백만원

-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734백만원

-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159백만원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589백만원

-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98백만원

- 기금사업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1백만원

-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0백만원

-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49백만원

-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4백만원

-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277백만원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88백만원

- 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2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800백만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210백만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844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 20,351백만원

- 여유재원 예수·예탁금 1,250백만원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규모는 총 1억 5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73억 39백만원 대비 0.4%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2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73억 39백만원 대비 3.1%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2억 82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73억 39백만원 대비 8.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3	37,339	3,282	8.7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7억 77백만원
- 지출잔액 : 1억 39백만원
- 예비비 : 3억 66백만원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23	73,231	-	20,000	-	2,938	50,293	-	-	73,231	-	73,231	-	-	-	-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 수입은 전입금 200억원과 이자수입 29억 38백만원, 예치금회수 502억 93백만원을 합한 732억 31백만원이며, 예치금 732억 31백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3	27,969	27,969	33,660	28,093	4	5,563	-	5,563	83.5
2022	22,035	22,035	27,661	24,474	43	3,144	-	3,144	88.5
2021	7,774	7,774	13,632	10,402	144	3,086	-	3,086	76.3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279억 6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336억 6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80억 93백만원을 수납하고, 4백만원은 정리보류¹⁾하여 55억 63백만원이 미수납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3.5% 수준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21~26)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20.3%로 총 56억 91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2022회계연도와 비교하였을 때 비율로는 2022년회계연도 125.5% 대비 5.2%p가 낮아졌으나 금액적으로는 2022회계연도 56억 26백만원 대비 6천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개정됨(2024.1.)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까지 사용되던 용어인 “불납결손”(또는 “결손처분”)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정리보류”로 명칭이 변경됨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세입예산액 대비 높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았던 항목은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세외수입					
그외수입 (수변감성도시과)	738	2	2	-736	· 소송 판결 지연으로 인한 미징수 발생
그외수입 (치수안전과)	0	398	390	398	· 행정재산 손실보상금 등 예상외 수입 발생
지난년도수입 (치수안전과)	95	5,513	38	5,418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수변감성도시과의 ‘그외수입’은 세입 예산액 7억 3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백만원으로 7억 36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22년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비 및 지연 손해금에 대한 소송환수금 민사소송²⁾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23년 회계연도 내 미징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미징수된 소송환수금은 '24.5월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24.5월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음.

2) □ 소송 추진경과

- '23.03.30.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접수
- '24.04.05. : 판결 선고(서울시 승소)
- '24.04.27. : 소송 확정
- '24.05.07. : 임의변제금 신청(서울시 → 서울고등검찰청)
- '24.05.13. : 국가 손해배상금 입금(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시)

- 다음으로, 치수안전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없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억 98백만원으로 3억 9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손실보상금(2억 1백만원)과 사업비 집행 잔액 및 기타 잡수익(1억 97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 여기서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에 공작물 설치용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별 손실보상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23년 사업시행자별 손실보상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유)	사업시행자	보상 내용	위치	규모 (㎡)	보상액 (천원)
1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편입 사유지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대행	구분 지상권 (지하)	강남구 대치동 3-1 외 2필지	3,297	37,093
				강남구 세곡동 13-4 외 5필지	1,719	1,438
				강남구 율현동 149-5	1,180	5,074
				강남구 일원동 445 외 8필지	7,289	52,239
			소계	16필지	13,485	95,844
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편입 사유지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대행	구분 지상권 (지하)	관악·구로구 4필지	1,508.2	56,868
				영등포·동작구 6필지	2,094.1	47,899
				소계	10필지	3,602.3
계					17,087.3	200,611

- 다음으로, 치수안전과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9천 5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55억 13백만원으로 54억 1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징수결정액의 경우 이월된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에 반해 예산액은 최근 2년간('21~'22년) 평균 징수율(3%)을 기준으로 징수 가능성에 기초하여 추계함에 따라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 향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납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액의 추계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 3] 최근 3년간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b)-(a)
2023	95	5,013	4,921
2022	99	3,114	3,015
2021	68	3,306	3,238

다) 미수납액 (결산서 p.21~26)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55억 63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55억 63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55억 63백만원
- 하천사용료	16백만원
- 변상금	60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54억 79백만원
- 기타(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8백만원

- 이 중 ‘지난년도수입’이 54억 79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질적 장기 체납에 따른 것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초기 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음 [표 4]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자금압박(55억 55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표 4]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5,562,999	3,144,287
무재산		-	149,858
행방불명		-	11,325
납세태만		-	2,824,895
폐업 또는 부도		-	32,795
국외이주		-	678
자금압박		5,554,891	3,527
기타		-	121,076
납기미도래		8,108	133

- 물순환안전국은 이에 대해 미수납액 사유 간 구분이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분류하였다는 의견이나, [표 5]의 미수납액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각각의 사유별로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수납액 건별 원인조사만 철저히 한다면 분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난 2022회계연도까지 미수납액을 아래 [표 5]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분류([표 4] 참조)해 왔다는 사실에서 보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 여겨지는바 원래 방식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5] 미수납액 판단 기준

순번	미수납액 판단 기준
1	무재산 : 납부의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2	행방불명 : 거주상태가 ‘사망말소’, ‘거주불명’ 등

3	납세태만: 납부할 여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폐업 또는 부도
5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6	격리 또는 입원
7	소송계류 : 행정소송 등 소송이 진행 중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국외이주 : 납부의무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9	자금압박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0	기타 : 위 사유 외 미수납 사유
11	납기미도래 : 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로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경우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130,208	19,710	800	1,911 (-1,911)	4 (-4)	945 (-945)	150,718	130,267	14,149	600	13,549	9	6,293 (4.2%)
2022	98,516	16,696	-	1,177 (-1,177)	-	884 (-884)	115,212	88,360	19,710	5,084	14,626	2,477	4,665 (4.0%)
2021	108,301	21,752	6,776	768 (-768)	20 (-20)	316 (-316)	136,829	113,931	16,696	2,553	14,143	46	6,156 (4.5%)

가) 개 요

- 예산액 1,302억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7억 1천만원, 예비비 사용 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7억 18백만원으로, 이 중 86.4%인 1,302억 67백만원은 지출하고 9.4%인 141억 49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06%인 보조금 반납금 9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2억 9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9~58)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2억 93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등 9건([표 6] 참고)에 해당함.

[표 6]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수변감성도시과	물순환 정책 활성화	71	30	41	57.2%
2	수변감성도시과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수 공급관로 공사 사업비 정산	1,362	914	448	32.8%
3	수변감성도시과	국고보조금 반환	0.3	0.17	0.13	42.9%
4	치수안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2,512	1,706	806	32.0%
5	치수안전과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	0	7	100.0%
6	치수안전과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3	0	3	100.0%
7	치수안전과	중랑천(성동구) 횡단 징검다리 설치	653	393	261	39.8%
8	치수안전과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펌프, 제진기, 밸브 등) 개량 및 시설보강	13,181	11,670	1,511	11.4%
9	치수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9,297	8,154	403	4.3%

○ 먼저,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수 공급관로 공사 사업비 정산’은 2018년 12월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수 공급관로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사업비를 정산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3억 62백만원 중 32.8%인 4억 4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SH공사가 마곡지구 공급관로 공사³⁾를 ‘18.12.월 준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 및 합동회의 과정에

3) □ 마곡지구 공급관로 공사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 기 간 : 2011.12.~2018.12.

○ 사 업 비 : 51.6억원(당초 38억원 → 51.6억원)

※ 증액사유: 마곡지구 공급관로 연장, GIS구축, 합동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 등

○ 규 모 : 공급관로 31.8Km(D80mm~D600mm)

※ 사업근거: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관로 공사 추진계획(물관리정책과-112998, 2011.12.26.)

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SH와 협의하여 '22.12.26일 인수인계됨에 따라 최종 정산 공사비 13억 62백만을 '23.7월 추경에 편성했던 것으로,

- 당초 최종 정산공사비 중 감리비를 SH공사에서 공사비의 11.315%(5억 25백만원)로 개략 산정하였으나 '23.12월 최종 정산 시 마곡지구 공구별 단지 조성 공사 도급공사비 대비 감리비 효율이 1공구가 3.660%, 2공구가 4.768%였음이 확인되어 4억 48백만원을 불용한 것임.
- 이는 물순환안전국이 SH공사가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감리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편성함에 따른 오류라 여겨지는바, 주의가 당부된다 할 것임.
-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게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12백만원 중 32%인 8억 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시민이 보험사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행정안전부로 풍수해보험료(이하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통보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보전해 주는 체계임.



[그림 1] 풍수해보험 지원 절차

- 불용 사유는 '22.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급증('21년:5,759건→'22년:45,265건→'23년:106,097건)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 조사를 통해 2023년 제1회 추정으로 21억 3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 풍수해보험은 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가 지원([그림 1] 참조, 가입 후 계약 체결 1개월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납부액을 사전에 알 수 없는바, 자치구별 가입자 추정치로 소요예산을 제출받아 산출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추정액(26억 42백만원)과 실가입액(17억 6백만원)의 차액으로 발생한 8억 6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22.8월 폭우 피해 이후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른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해되나 예산편성 이후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7]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가입 내역 (건)	계	157,121	106,097	45,265	5,759
	주 택	15,327	7,957	3,313	4,057
	상가/공장, 온실	141,794	98,140	41,952	1,702
예산액(시비, 백만원)		2,642	2,512	100	30
집행액(시비, 백만원)		1,834	1,706	99	29

- ‘중랑천(성동구) 횡단 징검다리 설치’ 사업은 둔치 내 좌우 횡단을 위한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하천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53백만원 중 39.8%인 2억 6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중랑천의 경우 국가하천인 관계로 한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22.6월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이유로 '22.7월 점용허가 보류 회신을 함.
- 이처럼 '23.8월 점용 불가 회신⁴⁾에 따라 중랑천 저수호안 붕괴에 따른 정비비(3억 92백만원)를 제외하고는 징검다리 설치비 2억 61백만원을 부득이 불용한 것임.
- 동 사업의 예산현액 6억 53백만원은 '21년에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이 '22년에 또다시 사고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또다시 일부가 불용되면서 3년간이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낳았는데, 시정노력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하천점용허가 검토의견 회신」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3264, 2023.8.16.)

다) 예산전용⁵⁾(결산서 p.73)

- 예산전용은 3건에 4백만원으로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등이며 손해보험(공제)을 기존 수탁기관 명의를에서 시 명의로 직접 가입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음.

[표 8] 예산전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감	증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39	△0.2		339	'23. 4. 1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0.2	0.2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치수 및 하천 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 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0	△0.4		539	'23. 4. 1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0.4	0.4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 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자치단체 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280	△3		10,277	'23. 4. 1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3	3	

- 동 전용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6)에서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5)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 ② (생략)

- ‘목동 재난체험관’과 ‘청계천 문화디지털 관련 시설물’, ‘청계천 시설물’의 경우 이들 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및 대행 받아 운영하는 ‘(재)한국어린이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표 9] 참조)하고 있는바,
- 서울시가 상위법령 준수를 위해 손해보험(공제)에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민간위탁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여 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른 것임.
- 이는 당초 위탁·대행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표 9] 목동재난체험관 및 청계천 시설물 등 보험가입 현황

시설명칭	목동재난체험관	청계천 및 문화디지털 시설(12개)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1 ~광진구 강변북로 292
규 모 (대 상)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252㎡)	화장실(3), 판잣집테마촌(1), 안내부스(3), 생태학습장(1), 유지용수관리소 관련 시설(3), 자양취수장(1)
시설소유자	서울시 소유	서울시 소유
위탁(대행)기관	(재)한국어린이재단	서울시설공단
보험(공제)가입 자 변동	(재)한국어린이재단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
보험(공제)종류	화재보험(KB손해보험)	건물시설물재해복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라) 예산이체⁷⁾(결산서 p.77)

○ 예산이체는 5건에 9억 45백만원으로, 이는 '23.3.10일 「서울특

7)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가 개정⁸⁾되어 부서별 권한에 변동이 있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정 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10] 예산이체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5건		945	945	945	
치수안전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자치단체간부담금	595	595	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595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5	5	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0	0	5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	26	26	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	0	0	26	
치수안전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300	300	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0	0	300	
치수안전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	자치단체간부담금	20	20	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20	

마) 예산변경⁹⁾(결산서 p.85)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9건에 19억 11백만원으로 이 중 ‘방학천 (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4건은 공통적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임.

8) [시행 2023. 3.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542호, 2023. 3. 10, 일부개정]

9)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11]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9건			27,684	1,911	1,911		
치수 안전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치단체자 본보조	7,366	1,050	0	2023-10-13	한각 지천 수심측량 결과 퇴적물로 통수단면이 축소, 금년 내 공사가 시급함에 예산 변경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1,056	0	1,050		
치수 안전과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282	53	0	2023-10-31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전기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35	0	53		
치수 안전과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228	2	0	2023-12-28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전기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88	0	2		
치수 안전과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50	181	0	2023-11-06	수해피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주변저지대) 수위변화를 관리하는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 템 기능개선을 위하여 예산 전용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0	0	181		
치수 안전과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시설비	1,253	128	0	2023-04-24	방학천 좌안 공사 착수 준비 중 기존 공종 대비 공사 난이도 상승, 공사감독자의 주.야간 상주 불가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을 위한 변경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감리비	0	0	128		
치수 안전과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39	15	0	2023-10-16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용 동력비 부족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277	0	15		
치수 안전과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시설비	2,710	312	0	2023-12-07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대비 당해연도 감리비 예산 부족에 따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부족한 감리비 예산 확보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감리비	600	0	312		
치수 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시설비	400	109	0	2023-04-28	공사휴지기간 감리비 미편성으로 예산이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감리비	100	0	109		부족하여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
치수 안전과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시설비	900	60	0	2023-12-07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변경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감리비	100	0	60		

- 상기 9건의 변경사용 중 먼저,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경우는 시가 '23.8.15일 한강 지천의 수심을 측량한 결과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퇴적물(퇴적량 19,040m³)로 인하여 지천 합류부 구간의 통수단면적이 축소(1m~1.5m 수심부족)되어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억 5천만원을 동일 사업내 시설비로 융통하여 준설비를 확보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부득이했음은 인정되나 가급적 변경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풍수해 예방대책’의 경우 '23.10.31일과 12.28일 2회에 걸쳐 사무관리비 5,300만원과 2백만원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 이는 '23. 7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고지수직구 및 저지1수직구 수문고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유입되면서 터널 내 잔류수를 배제하고자 당초 계획에 없던 펌프가 가동('22년 대비 159일 증가)되었고, 이에 전년 대비 전기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표 12] 참조)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임.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20년 준공한 시설이고 사용빈도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수직구 수문에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펌프 가동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는바,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자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

[표 1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전년대비 전기·하수도 사용료 비교

구 분	2022년	2023년
전기 사용료	222,164천원	240,460천원
하수도 사용료	280,955천원	473,771천원
계	505,141천원	716,254천원

-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하천 비상 대피 알림 시스템 및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하천내 고립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은 동일 세부사업내 공공운영비 1억 81백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서울시가 급변하는 하천 수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 위기 관리상황관리시스템’의 성능을 개선¹⁰⁾코자 하였으나, 공공운영비가 하천 예·경보시설 정비,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

10) 사업명 : 하천위기상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물환경안전국 치수안전과-19086, 2023.11.2.)

사업예산 : 금180.974천원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업목적

- GIS 기반의 위치 연계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 각종 계측정보를 비교·분석이 용이한 그래프기반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개선
- 각종 수방계측정보를 통합 표출

- 부득이 전산개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운영비 1억 81백만원을 예산변경을 통해 융통한 것에 해당함.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공감은 되나 당초 예산서 내역에 없던 전산개발비를 새로이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일부 침해한다 할 것인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변경 시점이 11월이고 앞서 6월에 추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6월 추경에 편성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는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을 재설치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12억 53백만원 중 1억 28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동 사업은 방학천 우안공사 완료 후 좌안공사 착수 준비 중 기존 공종(우안) 대비 좌안공사 난이도가 상부 도로폭의 감소로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그림 2] 참조)함에 따라 공사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금회 감리비를 새로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코자 예산을 변경한 것임.
 - 이는 설계과정에서 현장 환경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못했음을 방증하는바, 설계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2]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현장 사진

-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는 전년(’22년)대비 전기요금이 인상(’22년도 단가 : 147원/kw, ’23년도 단가 : 194원/kw)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동력비가 부족하게 되어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39백만원 중 1,500만원을 융통하여 사용한 것임.
-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중랑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활·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27억 1천만원 중 3억 12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동 공사의 4차분 공정(’22.3월~’23.12월)을 시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편성한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3억 12백만원을 융통한 것으로,
 - 동 사업의 경우 ’19년부터 이어진 장기계속공사로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표 13] 참조)하는 등 차수별 공사의 특성상

회계연도별 정확한 예산 제상의 어려움은 있다고 이해되나,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13]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1	5,000,000	59,800	0	5,059,800	3,641,409	1,417,073	1,318
2022	4,200,000	1,417,073	0	5,617,073	4,515,927	1,101,146	0
2023	3,310,000	1,101,146	0	4,411,146	4,347,001	64,146	△1

-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은 정릉천의 수질개선과 건천화 해소를 위해 유지용수를 추가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시설비 4억원 중 1억 9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수방 기간 공사중단을 고려하여 '23.5월~10월분의 감리비는 미편성하였으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¹¹⁾에서 발주청은 공사휴지기간에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자 부족한 감리비 1억 9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융통한 것임.

1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① (생략)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생략)

③ ~ ④ (생략)

- 이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상위기준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는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바) 예비비 (결산서 p.89)

- 예비비 사용은 1건에 8억원을 지출하였음.

[표 14] 예비비 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용 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감	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 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		800	800	'23. 4. 13.
예비비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16,450	△800		15,650	

- 금회 예비비 지출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예방코자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금 8억원을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지원한 것임.
- 이는 '22.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7명사망)가 발생한바, 행정안전부가 '23.1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문¹²⁾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1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추진 방안 안내」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106(2023.1.6.)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106('23.1.6.)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한 일반예산 및 예비비 등으로 설치하기 바람
 3. 물막이판 설치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 조례 및 재원현황 등을 검토하여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장기수선충당금¹³⁾을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도 일반예산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23.6월까지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지역 및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단지를 선별([표 15] 참조)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비비(8억원)로 지원¹⁴⁾함.

[표 15] 2023년 예비비를 통한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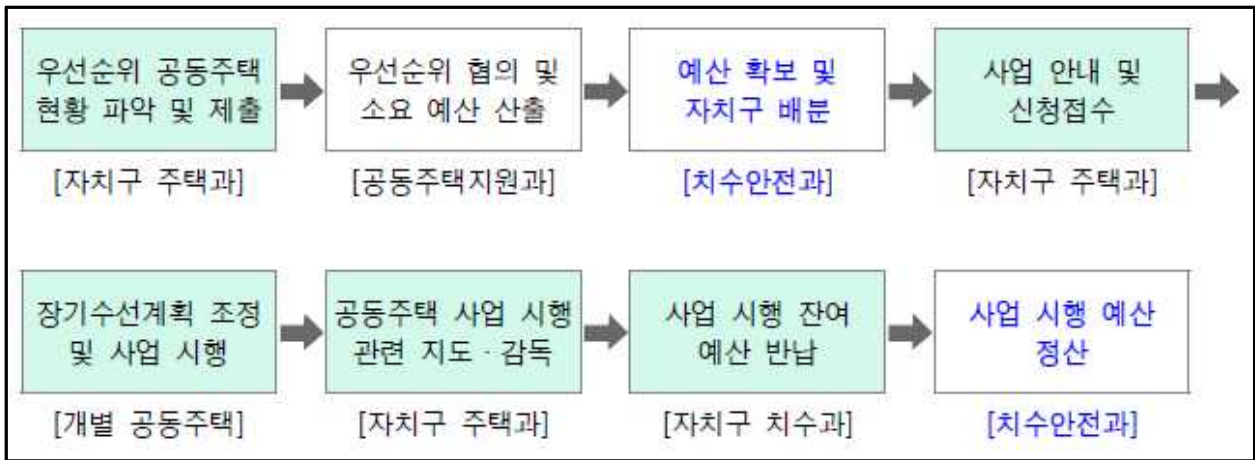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물막이판 (개소)	총 설치비 (백만원)	지원금 (백만원)	비고
합 계		93	48,466	320	1,600	800	
1	광진구	2	641	6	30	15	
2	중랑구	3	1,029	8	40	20	
3	성북구	1	440	3	15	7.5	
4	서대문구	2	2,017	15	75	37.5	
5	양천구	17	6,342	49	245	122.5	
6	강서구	3	1,559	12	60	30	
7	구로구	1	297	2	10	5	
8	동작구	29	11,132	89	445	222.5	
9	관악구	2	884	7	35	17.5	
10	서초구	16	8,144	46	230	115	
11	강남구	9	10,444	52	260	130	
12	송파구	1	1,945	8	40	20	
13	강동구	7	3,592	23	115	57.5	

4. 특히, 물막이판 설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3)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1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원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4206. 2023. 2.)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방안(안)
- 개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자부담 50% 이상)
※ 관할 자치구청에서 장기수선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지도·감독
- 침수 피해 단지 또는 침수 피해 지역 내 단지 등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 기존 자치구 시행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방지
- 2023년 우기(6월) 전 우선순위 공동주택 대상 물막이판 설치 완료
- 사업 진행 중 추가 지원 신청 시 검토 후 예산 반영 및 교부
- 추후 자치구 주관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순차적 확대(비의무단지 등)

- 동 예비비 지출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¹⁵⁾ 및 지침 통보 등에 따라 우기철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 인정됨.
- 다만, 향후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그림 3]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시행 절차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79~180)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35억 49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507억 18백만원 대비 9.0%에 해당함.

- 사유별 현황([표 16]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사추진 중

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장애발생 2건에 5억 38백만원, 사업계획변경 5건에 9억 87백만원, 준공기한 미도래 20건 117억 29백만원, 사전절차 지연 및 기타 1건 2억 95백만원 등 총 28건(135억 49백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16]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23	
	건수	이월액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2	538
사업계획변경	5	987
준공기한 미도래	20	11,729
사전절차 및 기타	1	295
계	28	13,549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17]과 같음.

[표 17]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7건			18,792	10,791	463	57.4%	
1	수변 감성 도시과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1,245	629	0	50.6%	실시설계 (디자인정책담당관) '23.7월 완료되어 사전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이행 후 발주하여 '23.10월에 공사계약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필요
2	수변 감성 도시과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	3,386	2,758	42	81.4%	하천 내 보행교 설치 구간 및 무단 전용 구간 자진 철거 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5개월 연장되어 사고이월
3	수변 감성 도시과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3,654	1,989	3	54.4%	공사준공 예정일이 당초 '23년 12월말에서 '24년 3월말로 연장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이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4	수변 감성 도시과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4,570	2,111	81	46.2%	수변활력거점 자치구공모(1~3차)를 통하여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안) 검토 등에 기간 소요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사고이월
5	수변 감성 도시과	수세권 활성화	100	49	0	48.5%	수변감성도시 홍보영상 용역 준공 예정일이 '24년 5월말로 원활한 용역 준공을 위해 사고이월 필요
6	수변 감성 도시과	홍제천 일대 수변감성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550	165	0	30.0%	본 용역은 장기계속으로 계약되어 용역기간이 '23.6.28 ~ '24.6.30.까지 계약된 상황으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사고이월
7	수변 감성 도시과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00	127	5	42.3%	사업대상지(중곡빗물펌프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완수기한 연장(당초: '23. 12. 24. / 변경: '24. 4. 30.)
8	치수안 전과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50	168	20	48.0%	용역 준공 예정일이 '24년 6월중순으로 용역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9	치수안 전과	빗물펌프장 노후장비 성능진단 용역	197	67	24	33.9%	용역 준공 예정일이 '24년 2월말로 용역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10	치수안 전과	홍수대책 필요교량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	177	57	35.4%	관계기관 의견 반영 등 교량시설에 대한 추가 검토로 당초 준공 예정일이 '23년 12월 중순에서 '24년 3월말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 필요
11	치수안 전과	우이천(성북구) 제방 복원공사	200	175	25	87.5%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용역 준공일이 당초 '23년 12월말에서 '24년 8월말로 연장 변경됨에 따라 이월 필요
12	치수안 전과	사당천 수변공간 조성	300	295	5	98.3%	입찰공고 후 계약 적격성 심사(2023.12.28.) 등 관련절차 진행시기 부족으로 미필 이월 발생
13	치수안 전과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1,290	388	200	30.1%	사업구간 내 건축물의 철거 등 후속 공정 착수 지연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로 사고이월 필요
14	치수안 전과	불광천(서대문구) 하상여과시설 정비사업	300	193	0	64.4%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및 과업 일부 지연되어 당초 '23년 12월말에서 '24년 3월말로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이월 필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유
15	치수안 전과	청계천(성동구) 용담 나들목 환경개선	150	150	0	100.0%	공사 준공 예정일이 당초 '23년 12월 중순에서 '24년 5월 말로 연장됨에 따라 이월 필요(동절기 철새보호 구역 내 공사 불가로 공기일정 연장)
16	치수안 전과	정릉천(성북구) 자연친화 문화공간 조성	200	100	1	50.2%	공사 준공 예정일이 '24년 2월중순으로 공사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17	치수안 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주민친화공간 조성	1,500	1,250	0	83.3%	공사 준공 예정일이 '24년 6월중순으로 공사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사업은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계획(시장 보고, 2021.10.15.)” 및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市 선도사업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 -18509, 2021.10.22.)”의 일환으로,
 - 서울을 수변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市 선도 사업임.
 - 먼저,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이하 “정릉천 사업”)'16)’ 사업은 정릉천 제기동 271-50번지에 위치한 복개공영주차장¹⁷⁾을 활용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 현액 12억 45백만원 중 50.6%인 6억 2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디자인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

16) □ 사업개요

- 위치 : 제기동 271-50 일대
- 규모 : 문화복합공간 조성(97.7㎡), 스케이트 연습장, 수변스탠드, 진입로 정비
- 기간 : 2023.10.06. ~ 2024.12.31.(공정률 30%)
- 총사업비 : 3,950백만원

17) 복개공영주차장 : 연장 320m, 폭 25m, 높이 3m, 211면, 동대문구 소유

공사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선행되어야 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자치구 협의, 구조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면서 과업기간이 연장¹⁸⁾되어 '23.7월 완료되었고,
- 이에 공사 발주 전 설계를 보완하고 사전절차(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를 이행하면서 '23.10월이 되어서야 착공이 이루어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처럼 선행되어야 할 설계 용역이 원활치 못하면 후속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추진을 보다 신중히 하여 선행 계획의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이하 "홍제천 사업")¹⁹⁾' 사업은 홍제천 상류²⁰⁾와 인접한 역사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수변 중심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3억 86백만원 중 81.4%인 27억 58백만원을 사고이

18) 1차 연기 2022. 11. 3. -> 2차 연기 2023. 3. 28. -> 3차 연기 2023. 5. 30.

19) 사업개요

- 위 치: 종로구 홍지동 136-3 일대
- 내 용: 수변공간(홍지교~옥천3교) 및 문화재(홍지문, 오간수교) 정비
- 기 간: '22. 6.~ '24. 6.
- 총사업비: 3,650백만원(설계비: 264백만원, 공사비: 3,386백만원)

20) 홍제천 상류 사업 위치

구분	세검정 인근	홍지문 인근
하천 연장	243m	174m
수변 연장	152m	59m
하 천 폭	8~21m	12~27m
수 로 폭	3~10m	6~12m
평시수심	0.1~0.2m	0.1~0.2m

월 하였음.

- 동 사업의 대상지는 홍지문 및 탕춘대성 등의 문화재가 자리잡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공사추진 시 시굴조사²¹⁾를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 하천 내 보행교 설치 구간 및 사업지 일부 무단 점용 구간을 철거한 후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당초 '23.12.30일에서 '24.5.31일로 연장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함.
-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이하 “도림천 사업”)²²⁾’ 사업은 도림천²³⁾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6억 54백만원 중 54.4%인 19억 8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도림천 내 각종 행사(플리마켓, 달빛축제, 페스티벌, 빛축제 등) 개최로 인해 공사가 자주 중지되었고, 신원시장 상인회가 둔치 연결을 위한 계단의 추가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관로매설 등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준공기한이 당초 '23.12.31일에서 '24.3.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상기 “홍제천” 및 “도림천”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필수

21) 시굴조사는 건설공사 면적 중, 문화유산 유존지역(유물산포지, 유적추정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문화유산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22) □ 사업개요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642-7(봉림교~신림교 구간)
- 규 모: 보·차도 선형변경 및 포장(L=600m) 및 공유형 수변테라스 조성(6개소)
- 기 간: '22. 6.~ '24. 3.
- 총사업비: 3,900백만원(설계비: 246백만원, 공사비: 3,554백만원, 홍보비 등:100백만원)

23) 도림천 현황 : 하천폭 40m, 수로폭 25m, 수심 0.3~0.5m

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전절차, 주민 협의, 지역여건 등의 사항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변감성도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2억 45백만원 중 50.6%인 6억 29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은 수변감성도시과가 추진하는 선도·시범사업 4개소와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선도·시범사업 3개소,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관련 사업 3개소 또한, '23년 본예산으로 별도 추진 중이던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²⁴⁾ 및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²⁵⁾ 등 총 12개 사업을 동 사업으로 흡수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현재 총 27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그 중 장지천 등 6개소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자치구와의 이견 협의, 사전심의(좋은빛 심의 등) 절차 이행, 총괄건축가 자문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준공일정이 연기되면서 절대공기

24) □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개요

- 위 치 : 안양천(구로구 오금교 일대)
- 규 모 : 수변 오토캠핑장 조성
- 사업기간 : 2023. 3. ~ 2024. 12.
- 사업내용 : 캠핑사이트 20면 내외, 공용·활동공간,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설계비 150, 공사비 1,850)

25) □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 개요

- 위 치 : 중랑천(광진구 중곡동 260-1일대)
- 규 모 : 수변데크, 및 커뮤니티 공간 약 500㎡
- 사업기간 : 2023. 3. ~ 2024. 12.
- 사업내용 : 커뮤니티 공간 조성(북카페, 휴게·공연 공간 등)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설계비 300, 공사비 2,700)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표 18]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세부사업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하천명 (자치구)	사고이월 발생사유	예산액		설계용역 기간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당초	변경
1	장지천 (송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설계(안)에 대한 자치구 이견에 대한 협의(그린카펫, 맨발길 조성 등) 인접한 상업시설(가든파이브)과 연계한 활용방안 협의(에어컨실외기 이전, 대상지와 가든파이브 연결을 위한 설계(안) 검토 등)에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 연장 	270	135	'23.5.1.~ '23.11.30	'23.5.1.~ '24.3.31
2	당현천 (노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안) 변경에 따른 좋은빛 심의 이행 및 브릿지(인도교) 공법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구조검토를 위한 지반조사 과업 추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한 사고이월 발생 	270	135	'23.5.3.~ '23.12.2.	'23.5.3.~ '24.3.31.
3	여의천 (서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설계(안)에 확정에 따른 지역수자원위원회심의 대상으로 심의이행을 위한 수리검토 실시,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24.4) 이행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부득이한 사고이월 발생 	270	189	'23.5.9.~ '23.12.4.	'23.5.9.~ '24.7.5.
4	중랑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설계(안)에 대한 총괄건축가 자문시 사업대상지 변경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지 신규 분석 및 설계도서 작성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한 사고이월 발생 	270	135	'23.5.3.~ '23.11.28.	'23.5.3.~ '24.6.28.
5	양재천 (강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설계(안)에 확정에 따른 지역수자원위원회심의 대상으로 심의이행을 위한 수리검토 실시,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24.4) 이행, 실시설계 구조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지반조사) 추가시행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부득이하여 사고이월 발생 	293	98	'23.6.13.~ '23.10.30.	'23.6.13.~ '24.5.31.
6	성북천 (성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단면변화에 따른 구조 및 수리 검토에 따른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 실시설계(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시행에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 연장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검토, 워터스크린 설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견 반영 등 	297	135	'23.6.20.~ '23.12.31.	'23.6.20.~ '24.4.30.

- '우이천(성북구) 제방 복원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을 복원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과의 연계성을 통해 주민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예산 현액 2억원 중 87.5%인 1억 7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우이천 제방 부지가 장위6구역 재개발구역²⁶⁾과 연접 ([그림 4] 참조)하여 있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공원위치 변경 등)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검토가 확정('24.3월) 되지 않은 관계로 연내 과업의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준공기한 연기('23.3.10.→'24.8.30.)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그림 4] 장위6구역 재개발구역 및 우이천 제방복원공사 구간

- 26) ○ 사업 개요
- 사업명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재개발
 - 위치 : 장위동 25-55 일대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33층 15개동 1,637세대(임대285포함)
- 추진 현황
- 2006.08.08. 추진위원회승인
 - 2020.07.08.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3.08.11. 사업시행(변경)인가
 - 2024.03.20. 공사 착공
 - 2024. 5. ~ 12.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26. 11. : 공사 준공

- 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변 민간개발 현장의 유무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사당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사당천 복개 구조물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98.3%인 2억 9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사당천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코자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로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서초구가 하천복원으로 인한 주차장, 공공시설의 감소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사업을 유예한바,
- '23.10월 서울시가 서초구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 하고 '23.11월 서초구가 사당천 복원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준공기한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는 당초 본 예산편성 시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를 서울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자치구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긴밀한 사전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계천(성동구) 용담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은 청계천의 주요 진출입로인 나들목 환경개선을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5천만원 전액 사고이월함.



위치도



용답나들목 현황 사진

[그림 5] 청계천(성동구) 용답 나들목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동 사업은 '23.3월부터 8월까지 디자인 설계용역 및 설명회를 거친 후 '23. 9월 공사설계 및 공사 낙찰자가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낙찰자가 타 공사 분쟁으로 인한 소송 및 지급정지명령 등으로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따른 업체선정('23.11월)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차년으로 연기('23.12월→'24.6월)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정릉천(동대문구) 주민친화공간 조성’은 정릉천 내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원 중 83.3%인 12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그림 6] 정릉천 주민친화공간(물놀이장) 위치도 및 조감도

- 동 사업은 '22.6월 동대문구의 자체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3년 설계를 완료한 후 연내 입찰에 부쳐 공사를 시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설계완료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23.11월에야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친바, 연내 준공이 어려워('24.5월 준공예정) 시설비 12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자치구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재배정 이후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설계변경이나 사고이월 등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3	9,966	9,966	8,531	8,531	-	-	-	-	100.0
2022	15,000	16,300	16,300	16,300	-	-	-	-	100%
2021	13,000	13,000	10,000	10,000	-	-	-	-	100.0

가) 개요

- 예산현액 99억 66백만원 대비 76.9%인 85억 3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31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3	75,508	6,797	-	322(-322)	-	-	82,305	34,286	42,476	30,124	12,352	144	5,399(6.6%)
2022	45,971	9,549	-	-	-	-	55,521	46,219	4,946	-	4,946	-	4,354(9.4%)
2021	56,876	5,389	-	135(-135)	-	-	62,265	51,925	9,550	2,500	7,050	-	790(1.3%)

가) 개요

- 예산액 755억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9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23억 5백만원으로, 이 중 41.7%인 342억 86백만원은 지출하고 51.6%인 424억 7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53억 9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9~60)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23억 5백만원 대비 6.6%인 53억 99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음.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결산서 p.80)

- 예산의 변경 사업내역은 다음 [표 19]와 같음.

[표 19]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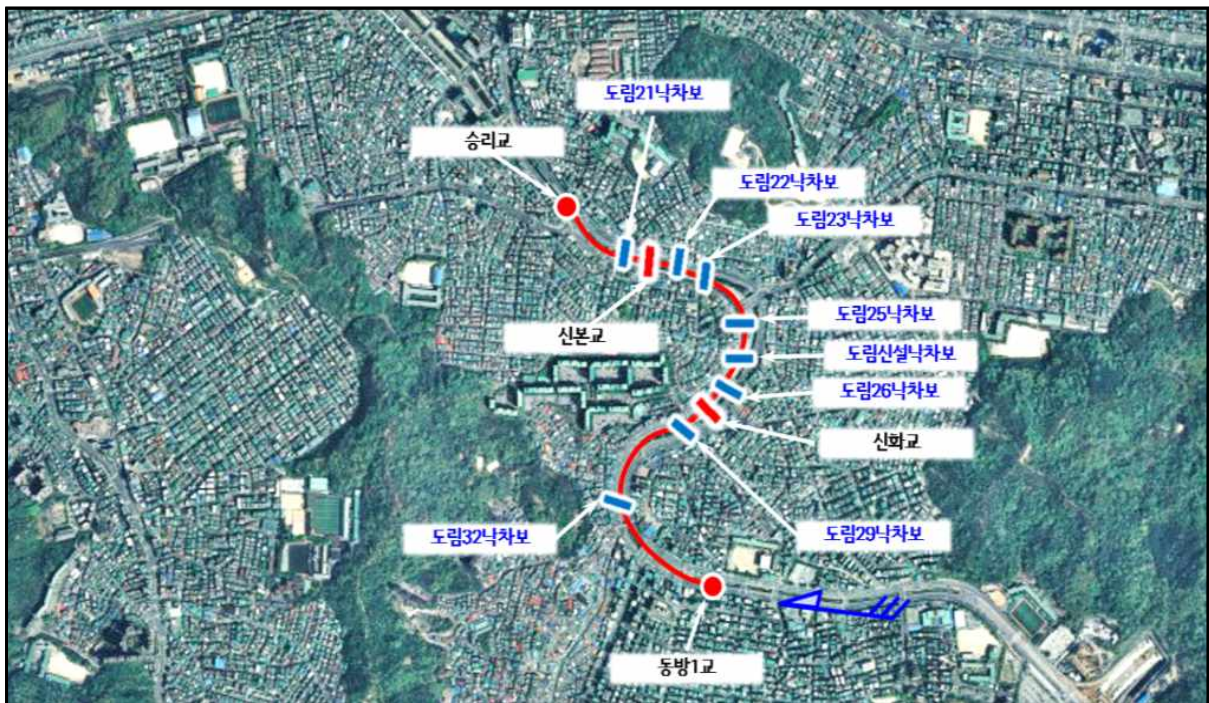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건			2,300	323	323		
치수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401-01 시설비	2,300	323	-	2023-3-10	감리비 예산 추가 소요되어 변경사용
		401-02 감리비	-	-	323		

-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은 안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도림천의 단면개선으로 통수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 동 사업은 서울시가 '22년 서울시설공단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²⁷⁾에 근거하여 감독대행 업무를 서

27)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울시설공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감리비를 미편성했던 사업
이나,

- 서울시설공단으로의 대행위탁이 여의치 않아 금회 시설비 23
억원 중 3억 23백만원을 감리비로 융통하여 전문감리인력을
확보함에 따른 예산변경임.
-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서울시설공단의 감독대행업무 여력 등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 여겨지므로 향
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그림 7] 도림천 단면확장사업 위치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같다.

1. “감독대행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감독업무를 대행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97)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11건(통계목별) 112억 7천 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804억 54백만원 대비 14%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20]과 같음.

[표 20]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치수 안전과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사업	6,085	1,917	9	32.2%	공사 준공일이 '24년 12월말로 이월 필요
2	치수 안전과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0,384	6,464	-	62.2%	차수별 공사 준공 예정일이 '24년 3 월말로 이월 필요
3	치수 안전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00	49,	-	49.9	용역 준공 예정일이 당초 '23년 12월 말에서 '24년 6월말로 연장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 이월 필요
4	치수 안전과	반포천, 사당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413	149	1	48.5	용역 준공 예정일이 '24년 6월말로 용역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5	치수 안전과	봉천천(관악구) 하천복원 사업	190	114	-	60%	용역 준공 예정일이 당초 '23년 11월 말에서 '24년 1월말로 변경되어 용역 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6	치수 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2,300	924	-	46.7%	해당 차수 준공 예정일이 당초 '23년 12월말에서 '24년 12월말로 변경되어 이월 필요
7	치수 안전과	산월 빗물저류시 설 유출지하 수 활용	509	241	25	48%	'24년 11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집 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필요
8	치수 안전과	금호 빗물펌프 장 시설용량증대 기본 및 실시설 계 용역	851	590	-	69.4%	용역 준공 예정일이 당초 '23년 12월 말에서 '24년 4월중순으로 변경되어 용 역준공을 위해 이월 필요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사업’은 오류천의 통수능 부족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동역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해 오류천 단면을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0억 85백만원 중 40%인 19억 19백만원을 사고이월함.



[그림 8]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사업 위치도 및 오류천 침수 사진

- 동 사업은 ‘안양천 권역 기본계획’²⁸⁾에 따라 ‘15. 3월부터 ‘29.4 월까지로 계획된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3단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2.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나,
- 박스 신설 구간의 지장물(한전, KT 등 통신 5개사) 이설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23.3월~9월)되면서 준공기한이 ’24.12월로 연기되어 공사비를 사고이월 한 것임.

28)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5호)

- 이처럼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에 대한 타 기관과의 협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차수별 공사를 계획하여 1차수 공사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²⁹⁾에 따라 30년 강우빈도의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03억 84백만원 중 62.2%인 64억 6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은 '22.2월 유입관로 내에서 굴진장비 베어링의 고장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부품수리 및 장비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22.6월에야 굴진장비를 반출시킨 후 '22.7월부터 설계사와 시공사 간에 보완설계협의를 진행되어 '23.5월 잔여구간 시공방안을 검토하고 변경설계를 추진하여 '23.7월 공사가 재개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표 21] 참조)을 살펴보면, 4년에 걸쳐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연례적인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당시에도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세워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서 오는 불합리라 여겨지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29)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물재생계획과-2879, 2019. 2. 28.)

[표 21]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9	2,000,000	200,000	0	2,200,000	2,000,000	0	200,000
2020	14,900,000	0	0	14,900,000	11,305,285	3,594,715	0
2021	17,000,000	3,594,715	0	20,594,715	17,089,489	3,471,406	33,820
2022	5,140,000	3,471,406	0	8,611,406	5,980,665	674,700	1,956,041
2023	9,710,000	674,700	0	10,384,700	3,919,968	6,464,732	0

○ ‘봉천천(관악구) 하천복원 사업’은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봉천로 통과 교통량이 감소됨에 따라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변 지역 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9천만원 중 60%인 1억 1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은 '23.2월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4월~10월 교통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수요예측, 하천 복원 형식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11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 자문결과 하천복원 단면계획 및 주변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자문의견([표 22] 참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준공기한을 '24.1월 중으로 연기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표 22] 봉천천 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자문회의 주요 의견

자문위원	주요 자문의견
박○○위원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취지를 고려, 반복개 단면이 아닌 호안 사면으로 완전복원하는 방안 검토 - 우안 기존 Box 존치(또는 재설치) 및 좌안 도로 하부 Box 신설로 통수단면 확보 가능 ○ 하천복원에 따른 유지용수 확보방안, 현재 추진 중인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계획과의 연관성 제시
김○○위원 (상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륜 Box 존치 및 도로 하부 Box 신설 등 측면 하부공간을 활용, 초기 우수저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청계천 복원사례 참고) ○ 하천복원 단면계획에 따라 공사비, B/C 등이 크게 변동되므로 복원 단면계획(안) 비교, 검토 필요
연○○위원 (토목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하천 양측면 하부에 별도 관로 신설 검토 ○ 하천복원에 따른 차로수 감소로 교통혼잡 등이 예상,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체 공영

자문위원	주요 자문의견
	주차공간 확대 방안 고려
임○○위원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원 구간에 대한 신호체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전반적인 교통, 신호체계에 대한 자세한 운영계획 검토, 마련 조치 ○ 당초 10~12차로로 운영 중인 도로가 하천 복원으로 축소되므로 사업 대상지 주변 기존 진출입로(당곡사거리, 롯데백화점 교차로 등)에 대한 적정 신호체계 및 차로수 마련방안 추가 검토
물순환 안전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원에 따른 ① 교통처리방안과 ② 복원 단면계획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본 과업의 핵심사항으로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속한 계획(안) 비교, 검토 및 B/C 분석 결과를 마련하여 최종 보고회 개최 추진 ○ 도림천과의 접속부에 대해서는 개방된 공간으로의 활용, 봉천천과의 연결, 개선방안 등을 보완하여 명확한 방향성 제시 (자문위원 공통의견) -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와의 연계방안, 오픈형 공간 마련 등

-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최근 수방시설물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어 빗물 펌프장의 수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8억 51백만원 중 69.4%인 5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23.4월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월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등산로 폐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바, 사업부지 변경에 상당기간이 소요('23.1월~5월)되었고,
- 이어서 PQ적격심사 등을 '23.7월에 완료한 후, 용역계약이 같은 해 8.30일 체결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임.
- 이처럼 다수의 사전절차를 포함하는 공사의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바, 차수계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 (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3	36,612	37,339	34,341	34,341	-	-	-	-	100.0
2022	33,731	33,731	33,115	33,115	-	-	-	-	100.0
2021	33,889	33,967	31,940	31,940	-	-	-	-	100.0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3억 39백만원으로 343억 4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43억 41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결산서 p.28-29)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93.8%로 총 22억 71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표 23]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유
경상적 제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43	63	63	-80	보조금 수입 감소로 예금 이자수입감소
임시적 제외수입					
그 외 수입	0	10	10	10	비정기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반납금 수입 등

보조금					
기금	32,383	29,606	29,606	-2,777	강동구·송파구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수입 25억원 감소 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65	1,971	1,971	6	비정기적인 2022년도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 잔액 반납분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00	543	543	-157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정산 지연으로 반납금 2024회계연도에 세입처리함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 부족 수납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323억 83백만원 대비 징수 결정액은 27억 77백만원 감소한 296억 6백만원으로,
 - 이는 국비(한강수계관리기금) 대 지방비(구비) 매칭으로 추진 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 구(강동구, 송파구)가 매칭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물량) 이 축소되면서 국비 수령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36,612	727	-	-	-	36,519	37,339	32,727	157	-	157	1,172	3,282 (8.7%)
2022	33,731	-	-	-	-	-	33,731	30,060	727	-	727	1,965	978 (2.9%)
2021	33,889	78	-	10 (-10)	-	-	33,967	29,951	-	-	-	1,468	2,548 (7.5%)

가) 개 요

- 예산액 366억 1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2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3억 39백만원으로, 이 중 87.6%인 327억 27백만원은 지출하고, 3.1%인 11억 72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32억 8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2~63)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2건임.

[표 24]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물재생시설과	예비비	366	-	366	100.0%
2	물재생시설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	3,402	888	2,514	73.8%

- 먼저, ‘예비비’는 당해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자치구(강동구, 송파구)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방비(구비 76%)와 기금(국비 24%)을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강동구, 송파구)에서 구비를 당초 계획 대비 44% 수준인 48억원만 확보함에 따라 사업 일부를 시행하지 않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표 25]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	변 경		
	계	지방비	기금		계	지방비	기금
계	14,188	10,786	3,402		5,688	4,800	888
강동구	10,848	8,246	2,602		4,900	4,200	700
송파구	3,340	2,540	800		788	600	188

다) 예산전용

- 예산 전용은 없음.

라) 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체의 이체는 21건에 365억 19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3.3월 개정(2023. 3. 10.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26] 예산 이체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 계	51건		36,519	36,519	36,519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시설비	1,600	1,600	-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시설비	-	-	1,600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시설비 (사고이월)	629	629	-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시설비 (사고이월)	-	-	629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감리비	200	200	-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감리비	-	-	200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무관리비	340	340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무관리비	-	-	340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재료비	220	220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재료비			220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사무관리비	86	86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사무관리비			86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재료비	54	54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재료비			54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5	5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5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94	194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재생시설과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94	시행규칙(2023.3.10.시행)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무관리비	1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무관리비			1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공공운영비	27	2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공공운영비			27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내여비	5	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내여비			5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타보상금	69	6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타보상금			69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비	63	63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비			63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65	16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65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사무관리비	314	31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사무관리비			314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공공운영비	80	8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공공운영비			80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특정업무경비	5	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특정업무경비			5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	6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시설비	73	73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시설비			73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자산및물품취 득비	37	3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자산및물품취득비			37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59	15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59	
치수안전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사무관리비	353	353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사무관리비			353	
치수안전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공공운영비	70	7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공공운영비			70	
치수안전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시설비	166	166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시설비			166	
치수안전과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시설비	98	98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시설비			98	
치수안전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	5	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			5	
치수안전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내여비	6	6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내여비			6	
치수안전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10	1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10	
치수안전과	예비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	310	31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예비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			310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사무관리비	40	4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사무관리비			40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국내여비	2	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국내여비			2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	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재료비	2	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재료비			2	
치수안전과	기본경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	2	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기본경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			2	
치수안전과	기본경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운영비	189	18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기본경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운영비			189	
치수안전과	기본경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	3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기본경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직보수	563	563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직보수			563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1,440	1,44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1,440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직급보조비	17	1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직급보조비			17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성과상여금	30	3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성과상여금			30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연금부담금	187	18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물재생시설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연금부담금			187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민건강보험 금	40	4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민건강보험 금			40	
치수안전과	한강보류 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1,088	1,088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한강보류 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1,088	
치수안전과	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직보수	52	5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직보수			52	
치수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 환금	1,800	1,80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국고보조금 반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 환금			1,800	
치수안전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기업특별회 계경상전출금	3,210	3,21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기업특별회 계경상전출금			3,210	
치수안전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기업특별회 계경상전출금	844	84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기업특별회 계경상전출금			844	
치수안전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 계자본전출금	3,402	3,40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 계자본전출금			3,402	
치수안전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특별회 계경상전출금	16,949	16,94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특별회 계경상전출금			16,949	
치수안전과	여유재원 예수·예탁금	예탁금	1,250	1,250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3.3.10.시행)
물재생시설과	여유재원 예수·예탁금	예탁금			1,250	

○ 예산변경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억 57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373억 39백만원 대비 0.4%에 해당되고, 세부내역은 [표 27]과 같음.

[표 27] 사고이월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	사 유
2건							
1	물재생 시설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159	29	28	18.2	용역 준공 예정일이 '24년 2월로 원활한 용역 준공을 위해 사고이월 필요
2	물재생 시설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589	128	0.5	21.7	매년 신규 계약체결 전(~2월)에 발생하는 한강공원 내 폐기물 처리 공백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기간을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2개년으로 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 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2020					해	당	없	음							

* 관련 용어

수 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예치금 잔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소방방재청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분담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 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 출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가) 개 요

- 물순환안전국 소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임.

나) 기금 총괄(결산서 p.72)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³⁰⁾은 전년도말 조성액 502억 9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³¹⁾ 229억 38백만원을 합산한 732억 31백만원임.([표 28] 참조)

[표 28]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회전기금	50,293	22,938	22,938	-	73,231

다) 기금 수입 결산(결산서 p.77)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현액이 732억 93백만원중 99.9%에 해당하는 732억 3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표 29] 참조)하였는데,
 - 이는 당초 시금고의 이자수입을 30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6천 2백만원이 감소한 29억 38백만원이 수납됨에 따른 것임.

30) 당해연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1)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기타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표 29] 회전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69,646	73,293	-	73,293	73,231	73,231

라) 기금 지출 결산(결산서 p.79~81)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 732억 93백만원에서 예치금으로 732억 31백만원을 지출([표 30]참조)함.

[표 30] 회전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69,646	73,293	-	73,293	73,231	-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 서 명)
41	관행적 예산 이월 지양	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사업 착수 이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여름철 하천 공사 중단 기간 최소화 등 관행적 예산 이월을 개선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권고함.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여름철 하천 공사 중단 기간 고려 등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계획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행적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 도시과) (치수안전과) (물재생계획과)
42	사업 지연 방지 위한 엄격한 관리 필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사업은 유사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 일정과 예산 집행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권고함.	현재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공사부서(도기본)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41. 관행적 예산 이월 지양

[수변인프라 조성·하천복원 사업 등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예산 이월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결산에서도 관행적 이월이 곳곳에서 나타남.

물순환안전국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180개 세부사업 중 41개 사업을 이월하여 이월률이 22.8%에 달하며, 현액의 50% 이상을 이월한 사업은 18개임.

예산현액 중 50% 이상의 예산을 이월한 사업의 이월사유 중에는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소요'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계약 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 기간 부족' (사당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 연장'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등과 같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전절차나 타당성 조사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내용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 사업의 이월 사유는 '하절기 하천내 공사 중지, 지연 등에 따른 이월'로 나타났는데, 여름철 우기 중 하천 공사 차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물순환안전국의 예산현액 50% 이상 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 사유
1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1,245,300	629,499	50.6%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2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	3,386,000	2,757,623	81.4%	우기철 하천내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 사유
3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3,653,600	1,989,257	54.4%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이월
4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4,570,000	2,410,550	52.7%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5	우이천(성북구) 제방 복원공사	200,000	174,998	87.5%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6	사당천 수변공간 조성	300,000	295,020	98.3%	계약 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7	불광천(서대문구) 하상 여과시설 정비사업	300,000	193,088	64.4%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및 과업 일부 지연으로 인한 준공 기한 연기
8	청계천(성동구) 용답 나들목 환경개선	150,000	150,000	100%	동절기 철새보호 구역 내 공사 불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이월
9	정릉천(성북구) 자연친화 문화공간 조성	200,000	100,300	50.2%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10	정릉천(동대문구) 주민친화공간 조성	1,500,000	1,249,762	83.3%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11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300,000	300,000	100%	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예산 이월
12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0,384,700	6,464,732	62.3%	변경 설계 완료 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13	봉천천(관악구) 하천복원 사업	190,100	114,100	60.0%	기본계획 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14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851,000	590,594	69.4%	부지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15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13,740,000	10,000,000	72.8%	총사업비 협의 소요 및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16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8,000,000	8,000,000	100%	총사업비 협의 소요 및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17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12,124,000	12,124,000	100%	총사업비 협의 소요 및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18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	1,850,000	1,081,690	58.5%	하절기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나. 시정권고

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사업 착수 이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여름철 하천 공사 중단 기간 최소화 등 관행적 예산 이월을 개선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권고함.

42. 사업 지연 방지 위한 엄격한 관리 필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22년 8월 수해를 계기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에 1조 3,6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립하기로 결정함.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 빗물터널의 수해방지 효과 등에 대한 논란 속에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협의 지연과 잇단 유찰 등으로 시작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임.

'23년도 예산 대부분을 이월(3개 세부사업 현액 33,864백만원, 이월액 30,124백만원, 이월률 89.0%)한 서울시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고 착공 후에도 지하 매설물,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사업내용

○ 위 치 :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 규 모

- 도림천 : (터널구간) 직경 9.8m, 연장 4.5km (저류량) 38만톤
- 강남역 : (터널구간) 직경 5.0~10.9m, 연장 4.3km (저류량) 45.5만톤
- 광화문 : (터널구간) 직경 5.97m, 연장 3.4km (저류량) 12만톤

○ 사업기간 : 2023. ~ 2028.

○ 총사업비 : 1,368,897백만원(국비 25%)

□ 추진경위

- '22.8. 기록적 폭우로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
- '22.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기재부)
- '22.11.~'23.03.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시)
- '23.03.~11.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환경부)
- '23.11.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 통보(1차, 1조 2,052억원)
- '23.12. 턴키공사 입찰공고(조달청)
- '24.01. 무응찰 유찰
- '24.01. 턴키공사 재입찰공고(조달청)
- '24.02. 무응찰 유찰
- '24.02. 총사업비 재협의(기재부, 환경부)
- '24.02.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 통보(2차, 1조 3,689억원)
- '24.03. 턴키공사 입찰공고(조달청)
- '24.03. 단독입찰 유찰
- '24.04. 턴키공사 재입찰공고(조달청)
- '24.04. 단독입찰 유찰

나. 시정권고

본 사업이 유사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 일정과 예산집행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권고함.